

파인만 퇴직연금우량채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효력발생일: 2023년 03월 03일

신탁계약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- 1) 개정 반영
 - 2) 투자대상 한도 변경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14 조(수익자 명부)	개정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~⑦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 」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~⑦ (현행과 같음)
제 18 조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	한도 변경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100% 이하</u> 로 한다. 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10%</u>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의 범위내에서 <u>10%</u> 를 초과할 수 있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60% 이상</u> 으로 한다. 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20%</u>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의 범위내에서 <u>20%</u> 를 초과할 수 있다.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45 조(투자신 탁에해지)	삭제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삭제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변경	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·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</p>	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· 전화·전신·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 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 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 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 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</p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p>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</p> <p>⑧~⑩ (생략)</p>	<p>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~⑩ (현행과 같음)</p>
'21,10.21' 자통법 개정 따른 용어 변경	용어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입방법/환매방법: 제 X 영업일 - 대차대조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입방법/환매방법: X 영업일 - 재무상태표
수익증권의 통장거래	용어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익증권저축약관
	부 칙	<신 설>	(시행일) 이 변경된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03일부터 시행한다.